폭행

[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. 2. 1. 2011고정33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정가진(기소), 이경민(공판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3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